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·운영을 위한 협약서

□ 사 업 명 :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* 지정·운영

*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·금속 제조업(C24, C25, C29) 집적지구
서울시 종로구 봉익동, 묘동,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집적지구
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C15) 집적지구

□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* ~ 3차년도 사업종료일

* 협약체결일은 국비 교부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일부터 적용하며, 3차년도 사업종료일 이후 별도의 기간(연장여부)을 정하여 운영협약 체결

□ 협약금액 : 8,300백만원 (국비 5,000백만원, 지방비 3,300백만원)

*** 집적지구 별 사업계획의 국비 부분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요청금액이며, 국비 지원여부는 미확정된 상황임**

「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」에 따른 연차별 활성화 계획 및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"중기부"라 한다), 서울특별시(이하 "서울시"라 한다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"공단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해당 집적지구에 공동기반 시설 구축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형소공인(이하 '소공인'이라 한다.)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업무의 범위) 중기부, 서울시, 공단은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.

1. 중기부 및 공단은 사업비 지급 및 정산, 성과평가, 성과활용 촉진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2. 서울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,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등의 제반사항 협조, 연차별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수행한다.

제3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차년도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. 단,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상호협의 후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인프라 운영 및 관리 등) 서울시는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및 공동 인프라 활성화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,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인프라는 시장이 관리한다. 다만 중기부 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구청장 또는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비의 사용·관리 등) ① 서울시는 보조금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하고,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를 보관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서울시는 사업비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명기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'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' 및 동법 시행령, 공단이 정한 '사업비 집행기준'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서울시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사업비 환수금이 발행한 경우 중기부 및 공단이 통보하는 기일까지 공단에게 국가 보조금의 비중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 단, 공단은 서울시가 사업비 환수 등에 대해 계속 불응할 경우 사업비 환수를 위해 채권 추심 등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

④ 서울시의 사업 추진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기부에 보고하고,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의 해약 및 변경) ① 서울시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중기부 및 공단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고시 및 협약내용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

나. 중기부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 및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

다.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라. 제출한 증빙서류 및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
마. 중기부의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

② 사업수행기간 변경, 인프라 사용의 변경 등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의 협약당사자는 즉시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중기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중기부는 서울시에 지급한 사업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서울시는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중기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단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추가약정)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전 서면 합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 할 수 있다.

제8조(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) 협약 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 등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중기부는 각 협약 당사자에게 해당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, 중기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7조에 의한 추가약정 절차에 갈음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.

제9조(자료 제출 등) ① 서울시는 중기부 및 공단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가감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, 현장 확인 시 관계서류의 열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서울시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관련자료·내용 누락으로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 경우, 중기부 및 공단은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① 본 협약 상 서울시가 본 협약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·운영 사업의 결과를 공개,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중기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·운영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광역자치단체의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전속하기로 한다.

④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, 각 주체의 기명·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위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, 서울특별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
2017년 11월 8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 최수규 (인)

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(인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 홍 빈 (인)

[붙임] 수정사업계획서 1부. 끝.